

방송 내용 규범으로서의 ‘사회통합’ 개념 재구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2020. 6. 13. 토)

곽 현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

온라인 혐오표현의 사회적 해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성하거나 차별, 편견,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시청자 감수성도 증가해왔다. 특히 성차별적 표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재의 방송심의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이다. 공정성의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공공성’이나 ‘공적 책임’의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과 심의제도 속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해왔다.

「방송법」 제5조 제2항은 방송의 공적 책임의 하나로 “방송은 국민의 화합에 ...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 제29조(사회통합), 제30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그리고 제21조(인권 존중)에 규정되어 있다.

현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에서의 사회적 약자(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 침해적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를 1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내세웠고,¹⁾ 이에 맞추어 2019년 9월 방송심의규정 개정에서 ‘인권 보호’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²⁾ 구체적인 내용은 사생활 보호 관련 심의기준이 보완되고(제19조 제3항),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및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관련 심의기준이 신설된 것이다(제21조의2와 제21조의3). 인권보도준칙은 인격권(피의자 등),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어린이

와 청소년 인권, 성적 소수자 인권,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으로 분야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용이 강화된 부분은 인격권과 성평등 관련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방송에서의 인종, 민족, 국가, 지역, 세대 등에 관한 차별적(불공정한) 대우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화의 다양성 존중’이나 ‘사회통합’이라는 적극적 규제 목표만이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심의규정 내의 ‘사회통합’ 조항의 형성과 변천 및 심의사례 분석을 통해 방송 내용 규범으로서의 ‘사회통합’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실제로 적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통합’ 위반 관련 규정 및 심의사례는 방송위원회 시기(1987-2007)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기(2008-2019)로 나누어서 ‘사회통합’ 기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적용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방송위원회 시기 심의사례는 각 연도별 <방송심의 사례집>에 나온 사례들을 참고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기 심의사례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심의의결현황 자료 전체를 살펴보았다. 법정제재로 의결된 사례는 심의의결서 전문도 참고했다. 이를 통해 방송 내용 규범 혹은 미디어 윤리 규범으로서의 ‘사회 통합’ 개념의 적절성 및 재구성 가능성을 따져보고자 했다. 논의를 위해 사회통합에 관한 사회학계의 기존 연구들과 방송 정책 이념에 관한 논의들을 참고했다.

1) (2018. 5. 15). [보도자료]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 발표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41호, 2019.9.23. 개정, 2019.9.27. 시행)